Eco-Quality 인증프로그램 절차

신청서 접수
- 인증범위 협의 - 모델 구분 및 인증품목 분류 협의 후 확정
- 인증수수료에 대한 사전 쌍방 합의

⬇

신청서 검토
- 인증업무 진행과 관련한 쌍방 이견 조율

⬇

심사계획수립
- 확정심사일 고지 전 최종 협의(일방 사정으로 평가계획 변경 가능)
- 심사장소, 심사일정 및 기타 심사 업무 수행과 관련한 협조사항 전달

⬇

현장심사
- 현장심사 : 심사원 2인 구성 원칙이나 심사장소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증원 가능(인증책임자 및 관찰심사원 동행 가능)

※ 주1)인증책임자 및 관찰심사원은 심사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
주2)시스템형식 1b는 현장심사 생략

⬇

제품평가
- 현장평가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진행
- 인증신청서 접수 시 협의된 모델의 구분 및 품목분류 방식대로 실시
- 심사원에 의한 샘플 채취, 샘플링 기록 및 입회자 동의

⬇

보고서 검토(종합평가보고서)
- 현장심사보고서 및 제품평가보고서를 종합적으로 검토

⬇

인증의 결정
- 인증기술위원회를 소집하여 결정

※ 이 경우 각 위원의 의결결과에 따라 추가평가를 진행할 수 있음

⬇

약정체결 및 인증서 교부
- 인증기술위원회에서 인증으로 결정 시 약정서에 쌍방 날인
- 신청제품 중 제품평가에 합격한 제품에 한하여 인증서 교부

⬇

공고
-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인증업체로 등록

< EQ인증 절차 - 1b >

